

2013년 ~ 2017년
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

2013년 ~ 2017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

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3조에 따라 “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”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하기 위함

□ 기본방침

-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유연한 조직운영
- 조직과 인력에 대한 수요 예측으로 안정적 조직 운영
- 조직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

□ 관련근거
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

□ 개 요

- 작성기준일 : 매년 1월 1일
- 계획기간 : 5년간(2013년부터 ~ 2017년까지)
- 주요내용
 - 정원관리 기관별 · 직급별 · 기능별 인력 배치계획
 - 신규인력 증원분야와 인력 감축분야 및 그 내용
 -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
 - 민간 위탁 및 공사나 공단으로 전환 계획

□ 정원관리 기관별·직급별·기능별 인력 배치계획

①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 운용계획

| 년도 | 증감 | 총계 | 본청 | 의회 | 직속기관 | | 사업소 | 읍 | 면 |
|-----------------|----|-----|-----|----|-------|-----|-----|----|-----|
| | | | | | 농업기술센 | 보건소 | | | |
| 기 준 (2012년말) | | 652 | 272 | 14 | 62 | 64 | 54 | 38 | 148 |
| 2013년 | 4 | 656 | 281 | 14 | 62 | 63 | 50 | 38 | 148 |
| 2014년 | 4 | 660 | 285 | 14 | 62 | 63 | 50 | 38 | 148 |
| 2015년 | 2 | 662 | 287 | 14 | 62 | 63 | 50 | 38 | 148 |
| 2016년 | 1 | 663 | 288 | 14 | 62 | 63 | 50 | 38 | 148 |
| 2017년 | - | 663 | 288 | 14 | 62 | 63 | 50 | 38 | 148 |

② 직종·직급별 인력 운용계획

| 년도 | 합계 | 일 반 직 | | | | | | | | 기 능 직 | | | | | 별정 | 지도 | 연구 | 정무 |
|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|----|------|----|-----|-----|-----|----|---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
| | | 소계 | 4급 | 4~5급 | 5급 | 6급 | 7급 | 8급 | 9급 | 소계 | 6급 | 7급 | 8급 | 9급 | | | | |
| 기 준 (2012년말) | 652 | 560 | 1 | 3 | 33 | 151 | 172 | 144 | 56 | 57 | 6 | 14 | 10 | 27 | 1 | 27 | 6 | 1 |
| 2013년 | 656 | 569 | 1 | 3 | 33 | 152 | 172 | 145 | 63 | 52 | 6 | 14 | 9 | 23 | 1 | 27 | 6 | 1 |
| 2014년 | 660 | 573 | 1 | 3 | 33 | 152 | 175 | 145 | 64 | 52 | 6 | 14 | 9 | 23 | 1 | 27 | 6 | 1 |
| 2015년 | 662 | 575 | 1 | 3 | 33 | 152 | 176 | 146 | 64 | 52 | 6 | 14 | 9 | 23 | 1 | 27 | 6 | 1 |
| 2016년 | 663 | 576 | 1 | 3 | 33 | 152 | 177 | 146 | 64 | 52 | 6 | 14 | 9 | 23 | 1 | 27 | 6 | 1 |
| 2017년 | 663 | 576 | 1 | 3 | 33 | 152 | 177 | 146 | 64 | 52 | 6 | 14 | 9 | 23 | 1 | 27 | 6 | 1 |

③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

| 구 분 | 인 력 증 원 | | | | | |
|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| 계 | 2013년 | 2014년 | 2015년 | 2016년 | 2017년 |
| 합 계 | 11 | 4 | 4 | 2 | 1 | |
| 기획조정 | | | | | | |
| 행·재정 | | | 1 (지적조사) | -1 (일반행정감) | | |
| 문화체육관광 | | | | | | |
| 보건복지 | 5 | 4 (사회복지3, 청소년수련관) | 1 (사회복지) | | | |
| 산업경제 | | | | | | |
| 환경관리 | 2 | | | 1 (석면관리등 업무신설) | 1 (기축분뇨 처리장) | |
| 도시주택 | | | | | | |
| 지역개발 | 4 | | 2 (경관테마랜드 고향의강조성) | 2 (농촌개발사업 백두대간생태 교육장) | | |
| 소 방 | | | | | | |
| 방재·민방위 | | | | | | |
| 의 회 | | | | | | |
| 읍면동 | | | | | | |

□ 신규인력 증원분야와 인력 감축분야

① 사회복지 인력 확충을 위한 정원 책정

- 목적 : 현장 복지체감도 향상 및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한 적정 수준의 사회복지인력 확충 필요
- 정원책정 : 4명

| 연도 | 계 | 일 반 직 | | | | | | | 기능직 | 지도직 연구직 | 비고 |
|------|----|---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-|------------|-----|
| | | 소계 | 4급 | 5급 | 6급 | 7급 | 8급 | 9급 | | | |
| 계 | 4명 | 4 | | | | | | 4 | 0 | 0 | |
| 2013 | 3 | 3 | | | | | | 3 | | | 기반영 |
| 2014 | 1 | 1 | | | | | | 1 | | | |

② 대형사업 추진에 따른 정원 책정

○ 청소년수련관 운영

- 위 치 : 거창군 가지리 일원
- 운영기간 : 2013년 ~
- 운영내용 :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,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, 저소득 아동 복지서비스 제공,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

○ 거창 위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

- 사업위치 : 거창군 마리면 장백교 ~ 북상면 갈계리 일원
- 사업기간 : 2012년 ~ 2016년
- 사업비 : 235억원(국비 141, 도비 47, 군비 47)
- 사업내용 : 하천정비 L=10.0km

○ 거창 경관테마랜드 조성사업

- 사업위치 :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, 남하면 무릉리 일원
- 사업기간 : 2012년 ~ 2015년
- 사업비 : 286억원(국비 40, 도비 200, 군비 46)
- 사업내용 : 990천 m²(자연환경체험공원 814천m², 교육·체험관 63천m², 친환경체육시설 113천m², 자전거누리길 L=40km)

○ 지적재조사 사업

- 사업위치 : 거창군 일원
- 사업기간 : 2013년 ~ 2030년
- 사업비 : 65억원(국비 65)
- 사업내용 : 지적 불부합지 정리 등

○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

- 사업기간 : 2012년 ~ 2019년
- 사업비 : 187억원(국비 131, 도비 19, 군비 37)
- 사업내용 : 삼봉산권역, 남상면소재지, 신원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

○ 목재문화체험장 및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

- 사업위치 : 거창군 고제면, 위천면 일원
- 사업기간 : 2012년 ~ 2015년
- 사업비 : 152억원(국비 92, 도비 28, 군비 32)
- 사업내용 : 부지면적 10,000m² 건축면적 4,000m²

○ 환경보건분야 신규업무 신설

- 신설법규 : 석면피해구제법, 석면안전관리법, 빗공해방지법, 환경보건법, 실내공기질관리법
- 업무기간 : 2013년 ~
- 업무내용 : 공공건축물,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석면 지도감독, 슬레이트주택 조사와 철거지원, 빗공해방지법에 따른 각종 민원 해결 등 환경공해에 따른 국민 건강관련 업무 대폭 증가

○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와 운영

- 사업위치 : 거창군 양평리
- 사업기간 : 2013년 ~ 2017년
- 사업비 : 160억원(국비 128, 도비 6억, 군비 6억, 환경부낙동강수계 기금 20억)
- 사업내용 : 양돈분뇨 정화 공공처리(1일처리용량 95톤)

○ 정원채정 : 8명

| 구분 | 연도 | 계 | 일 반 직 | | | | | | | 가능직 | 지도직 연구직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|---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-|------------|----|
| | | | 소계 | 4급 | 5급 | 6급 | 7급 | 8급 | 9급 | | | |
| 계 | | 8명 | 8 | | | | 5 | 3 | | | | |
| 청소년수련관 운영 | 2013 | 1 | 1 | | | | | 1 | | | 보건지 복지 | |
| 거창 위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| 2014 | 1 | 1 | | | | 1 | | | | 지역 개발 | |
| 거창 경관테마 랜드 조성사업 | 2014 | 1 | 1 | | | | 1 | | | | 지역 개발 | |
| 지적재조사 사업 | 2014 | 1 | 1 | | | | 1 | | | | 행·재 정 | |
|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| 2015 | 1 | 1 | | | | 1 | | | | 지역 개발 | |
| 목재문화체험장 과 백두대간 생 태교육장 조성 | 2015 | 1 | 1 | | | | 1 | | | | 지역 개발 | |
| 환경분야신규 업무 | 2015 | 1 | 1 | | | | | 1 | | | 환경 관리 | |
| 가축분뇨 공 공처리 시설 설치와 운영 | 2016 | 1 | 1 | | | | | 1 | | | 환경 관리 | |

□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

○ 세입규모

(단위: 백만원)

| 구분 | 2013 | 2014 | 2015 | 2016 | 2017 | 비고 |
|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|
| 계 | 411,935 | 430,254 | 435,449 | 452,482 | 464,723 | |
| 지방세수입 | 18,231 | 18,588 | 18,963 | 19,354 | 19,741 | |
| 세외수입 | 57,275 | 57,611 | 58,872 | 59,861 | 60,519 | |
| 의존재원 | 336,430 | 354,055 | 357,614 | 373,266 | 384,463 | |

○ 인력운영비

(단위: 백만원)

| 구분 | 2013 | 2014 | 2015 | 2016 | 2017 | 비고 |
|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|
| 인건비 | 48,424 | 51,436 | 53,816 | 56,091 | 59,344 | |

□ 민간 위탁 및 공사나 공단으로 전환 계획 : 해당없음

관 련 법

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23조(인력운용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(이하 "기본인력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되,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 시·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도지사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와 협의하여야 하며, 시·도지사는 시·군·구의 협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6.29>

④ 시·도지사나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이전에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⑤ 제3항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시·도지사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는 기본인력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보완사항 등 협의결과를 알려야 하며,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결과에 따라 기본인력계획을 보완·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2.6.29>

⑥ 기본인력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2.29>

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

제3조(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 등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정원관리기관별·직급별·기능별 인력 배치계획
2. 신규인력 증원분야와 인력 감축분야 및 그 내용
3.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
4.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사(公社)나 공단으로 전환할 계획